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장

제4호      2017. 1. 31(화)

## 조례

남원시 조례 제7호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 1

##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33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 16
- 남원시 공고 제2017-145호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공고 ----- 25
- 남원시 공고 제2017-160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고 ----- 35

람										
---	--	--	--	--	--	--	--	--	--	--

##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생활과장

### 1. 개정이유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남원시 출산장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종전의 1년 미만 거주자의 출산장려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출생등록시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다. 종전의 산후조리지원금 지급대상자의 1년 이상 거주제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4항)
- 라. 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 (안 제10조제1항)
- 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안 제10조제2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 26. ~ 2017. 2. 16.(20일간)
  - 결 과 :
- 다. 비용추계서 : 별첨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7호

##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장려금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 2 장 출산장려금 지원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신생아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시 5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미혼,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생아가 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가 출산장려금의 50퍼센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 그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추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⑤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등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신청서를 검토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읍·면·동별 출산장려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 3 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제9조(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시 관

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지원은 산모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비용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 중 1,000원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신청은 제6조제2항의 출생신고시 제출하는 신청서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산모·신생아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출산 축하용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제5조 관련)

## 1. 출산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원)	비 고
첫째아	500,000	
둘째아	1,000,000	
셋째아	3,000,000	
넷째아 이상	4,000,000	

## 2. 산후조리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원)	비 고
셋째아 이상	500,000	

[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장려금 (추가) 신청서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출산지원금 최초 신청일 :					
보호자	부	생년월일 . . .		전입일시	년	월(일)	
				남원시 거주기간	년	월(일)	
	모	생년월일 . . .		전입일시	년	월(일)	
				남원시 거주기간	년	월(일)	
신생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 . .				
	출산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제아)					
	분만의료 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 소	전라북도 남원시 로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 화 번호	자 택			핸드폰 번호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추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주소 : 신생아와의관계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출산장려담당자 직급 성명 (인) 읍·면·동 장 (직인)</p>							
<p><b>남원시장 귀하</b></p>							
<p>첨부서류: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p>							

[별지 제2호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신청서**

산 모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가구원수		출산일		
이용기관명		서비스 이용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				
생 아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위와 같이 산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성명 :

(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남원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

[별지 제3호 서식]

##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 (제10조관련)

번호	부(父)				모(母)				출생아			출생순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제10조관련)

(단위 : 원)

번호	출 생 아				부모 성명		거주기간		지 급 내 역				전화 번호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주소	부	모	부	모	예금주	은행명	지 급 계 좌 번호	지원액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제5조 관련)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안명 :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출생아 현황 : 533명(2016.12.31.까지 출생등록자 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대상 : 480명(237,000천원)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자 : 180명(54,000천원/1인당30만원)
  - 정부지원금 지원비대상 : 300명(183,000천원/1인당61만원)
- 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 : 600명(30,000천원)

다. 추계의 결과

- 연간 267,000천원(시비 100%) 추가 발생

라. 추계의 상세내역 :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장 이 순 례

[별지 제2호 서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1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입							
지 방 세							
세 출		267,000	267,000	267,000	267,000	267,000	1,335,000
출산 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과건비용	237,000	237,000	237,000	237,000	237,000	1,185,000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267,000	267,000	267,000	267,000	267,000	1,33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 조 금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67,000	267,000	267,000	267,000	267,000	1,335,000
	지 방 세	267,000	267,000	267,000	267,000	267,000	1,335,000
	세외수입	-	-	-	-	-	
지 방 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 타 ( , 민자등)		-	-	-	-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33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 원 시 장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변경·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별표 4) “제 증명 등 수수료” → “각종 증명 등 수수료”로 변경

나. (별표 4)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신설 및 변경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를 800원으로 신설
- 의료기관 개설 장소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20,000원으로 변경
- 의료기관 개설 장소 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40,000원으로 변경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50,000원, 변경등록 신청 20,000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4,000원 신설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 ☎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4)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4]

##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 명)	기준	요 액	비 고
1.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1통	5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1통	500원	
나. 중소기업주	1통	500원	
다.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라.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생산 실적	1통	3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다. 수출 실적	1통	300원	
라. 납품 실적	1통	300원	
마. 건물 사용	1통	300원	
바.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아.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차.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통	300원	
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1통	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1통	3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나.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300원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통	300원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1건	8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300원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1건	2,000원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2) 허가신청	1건	5,000원	
(3) 면허·허가연장 신청	1건	5,000원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종류마다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종류마다	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1건	2,000원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1건	20,000원	
(3) 주유소	1건	20,000원	
(4)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마. 석유판매업 신고			
(1)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2) 항공유 판매업	1건	10,000원	
(3)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 주유소	1건	20,000원	
(2) 판매소	1건	10,000원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1건	점용료의 1/1,000	
다. 도선장 설치 허가	1건	1,000원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1건	5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건	9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건	1,3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1건	2,100원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1건	500원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1건	500원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원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1건	1,000원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원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1건	점용료의1/1,000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1건	20,000원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1건	10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1건	40,000원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1건	40,000원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파.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	( )은 읍·면지역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원 (2,300)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60,000원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50,000원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거. 출판사 신고	1건	10,000원	
너. 출판사 변경신고	1건	5,0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1건	800원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1건	800원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원	
9. 승강기 시설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20,000원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17-145호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제설·제빙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공업화박관강구조(PEB)와 아치판넬 용어 신설
  - 제설·제빙의 용어의 범위 확대

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라.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및 안전유의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제설·제빙 작업 중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3. 조례개정안 : 붙임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2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안전재난과)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팩스(063-620-6747),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  
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  
도가 아닌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  
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

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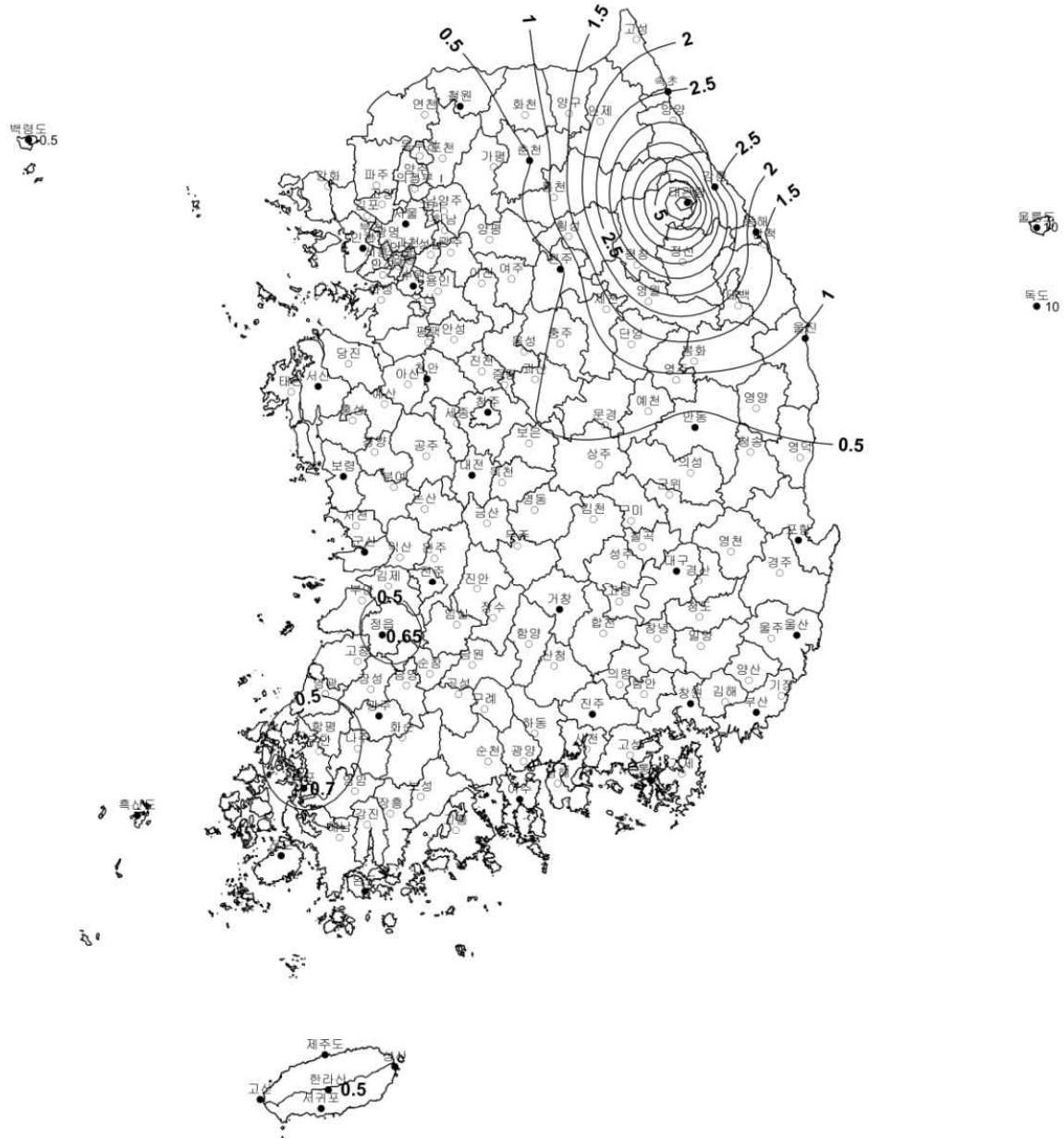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적설량(cm)		제설 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 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 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 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남원은 0.5 이하 지역에 해당함
0.5 초과 1.0 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 초과 1.5 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 초과 2.0 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 초과 2.5 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 초과 3.0 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 초과 3.5 이하 지역	98.0	-	49.0	-	
3.5 초과 4.0 이하 지역	112.0	-	56.0	-	
4.0 초과 4.5 이하 지역	126.0	-	63.0	-	
4.5 초과 5.0 이하 지역	140.0	-	70.0	-	
5.0 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sup>2</sup>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 퍼센트 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sup>2</sup>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S_g$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남원시 공고 제2017 - 160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남원을 건설하여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함.

## 2. 예고기간 : 2017. 1. 26 ~ 2017. 2. 15(20일)

##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신청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단체 및 위탁기간 신설 (안 제17조)

-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다. 위탁의 신청 조항 및 위탁관리 계약 신설(안 제18조~ 안 제19조)

라. 위탁업무 수행 조항 신설 및 운영 지원 (안 제20조~ 안 제21조)

마. 위탁업무 감독 조항 및 연장 신청, 위탁계약 해지 조항 신설

(안 제22조~안 제24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00 / 남원시 충정로341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8),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서식,”을 “서식 또는 공문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을 “변경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을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연장 신청)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제18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시 설 명				
<p>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남원시장 귀하</p>				
첨부서류	<p>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p> <p>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p> <p>3. 사업계획서 1부.</p>			

(별지 제5호 서식)

##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제2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시 설 명				
기 간	당 초	~	연 장	~
사 유				
<p>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남원시장 귀하</p>				
첨부서류	관리·운영위탁신청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자 하는</u>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허가 내용을 <u>변경하고자 하는</u>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자 하는</u>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3조(사용허가) ① -----  <u>사용하려는</u> -----  <u>서식 또는 공문을,</u>----- <u>변경</u>  <u>하려는 자는</u>-----  -----  -----.</p> <p>② ----- <u>사용하려는</u> -----  -----  -----.</p> <p>③ <u>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u>  <u>남원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u>  <u>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u>  <u>용허가를 할 수 있다.</u></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p> <p>③ <u>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u>  <u>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 신</u>  <u>청서를</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자는</u>  <u>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u> -  -----  -----.</p>
<p>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p>	<p>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p>

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 (생략)

<신설>

-----  
----- 받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관리) ① -----  
-----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 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연장 신청)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

<신 설>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